



# EU의 新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: 탄소국경조정 (CBAM) 및 외국보조금(Foreign Subsidy) 관련 규정 검토

2023.06.08

## 1. EU의 공급망 관련 다양한 규제 도입

2023년도부터 EU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對 EU 무역 및 투자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는 환경 이슈와 공급망을 연결시킨 **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, 이하 “CBAM”)**과 EU 역내에서의 M&A 및 공공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**외국보조금규정(Foreign Subsidy Regulation, 이하 “FSR”)**을 들 수 있으며,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

## 2.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

2021년 7월, EU 집행위원회는 기후 변화와 환경에 초점을 맞춘 **EU 그린딜 및 “Fit for 55”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 관련 규정(안)을 발표**했습니다. 이는 EU 내의 수입업체가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거래제(ETS)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과의 차액만큼 “CBAM 인증서”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.

2022년 12월, EU 집행위원회, 이사회 및 의회는 법안 채택을 위한 3자간 협상을 진행하여 CBAM 규정 최종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. 동 최종안은 2023년 4월 EU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2023년 5월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발효가 되었으며,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CBAM 규정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**(적용대상 품목군)** 시멘트, 비료, 철강, 알루미늄, 전기 및 수소 등 6개 품목군이 포함되며, 특히 철강의 경우, 특정 전구체(CBAM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기본 재료)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(예: 나사 및 볼트)까지 포함됨

- EU 역외에서 생산된 상기 적용대상 품목군이 EU 시장으로 수입될 경우, CBAM 규정 적용

○ **(배출 범위)** 원칙적으로 직접 배출(CBAM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배출)과 간접 배출(CBAM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배

출)까지 모두 포함

- 다만, 철강, 알루미늄 및 수소의 경우는 직접 배출만 포함

○ **(유예기간)**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만 있고 인증서 구매의무는 유예됨.

- 2026년 CBAM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EU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EU로 수입 가능
- 유예기간 중 EU 수입업자는 집행위에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 발생, 최초 보고 시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임

○ **(추가검토조항)**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(1) 유기화학 물질, 폴리머 및 기타 다운스트림 제품 포함 탄소 누출(carbon leakage) 위험이 있는 다른 상품으로 CBAM 규정 적용 확대 여부, (2) 유예기간 종료 후 간접 배출 포함 여부 및 배출량 계산 방법론 등 검토 예정

- 향후 CBAM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

### 3. EU Foreign Subsidy Regulation

2023년 1월 12일, 유럽 시장을 왜곡하는 외국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EU의 새로운 규정인 FSR이 발효되어 새로운 신고 요건이 마련되고 집행위원회에 광범위한 조사 및 집행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EU 역외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재정적 기여에 대해 “직권(ex officio)”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.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재정적 기여가 EU 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, EU 역내외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. 또한 집행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2023년 10월 12일부터 EU 역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M&A 등 기업결합을 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EU 공공조달(정부)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이전 3년 동안 EU 역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정적 기여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.

- 기업결합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EU 역내에서 통보일 직전 1년 간 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통보일 직전 3년간 총 5천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
- 공공조달 입찰 관련 예상 계약금액이 최소 2억 5천만 유로이고, 입찰 참여자가 통보일 직전 3년간 총 4백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

여기서 '재정적 기여'는 정부/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된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으며,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EU 역외 정부(한국, 중국, 미국 등)에서 제공받은 세제혜택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EU 집행위원회는 재정적 기여의 규모, 성격, 목적, 시장 상황, 조건 등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EU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합니다. 심사 결과 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집행위원회는 EU 내 무역활동의 일시적 제한, 투자 제한, 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FSR의 상세 이행 절차를 규정한 이행규정(안)을 발표하였으며, 이는 2023년도 2분기 말경 채택될 예정입니다.

앞으로 EU 역내에서 M&A 거래나 공동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FSR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통보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통보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 관리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

법무법인(유) 세종 ESG 센터에서는 최근 해외규제 및 공급망 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ESG 등 다양한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종합적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

## 관련구성원

### 이경돈

대표변호사

02-316-1677

kdlee@shinkim.com

### 송수영

변호사

02-316-1636

sysong@shinkim.com